



Samil PwC Assurance Monthly Newsletter

October 2021

Contents

GAAP

04 공급망 금융 약정(역팩토링)

GAAS

08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TAX

11 최신 세무뉴스

13 최신 세무예규판례

KSOX

16 2020 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19 ESG와 내부통제

21 코스닥협회 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FAQ streaming

01

GAAP
회계



공급망 금융 약정(역팩토링)

구매전용카드, 역구매카드, 역팩토링 등의 금융거래에서는 금융기관이 공급자에게 관련 금액을 선 지급하고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 기업이 금융기관에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계약이 최근에는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의 결제 수단에 그치지 않고 비교적 장기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상품 성격과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 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IFRS 해석위원회는 공급망 금융 약정(역팩토링)에 따른 자금의무의 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사항에 대해 2020년 12월 agenda decision을 발표하였으며, 아래는 회계기준원에서 해당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망 금융 약정(역팩토링)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판단이 적절한 것인지, 이러한 판단이 충분히 공시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진행경과

- IFRS 해석위원회(이하 ‘해석위’)는 ‘**공급망 금융 약정(supply chain financing arrangements)**’에 대한 아래의 이슈를 제출 받음

① ‘공급망 금융 약정’ 관련 부채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할지*?

* 즉, 구입한 재화나 용역과 관련한 인보이스가 역팩토링의 한 부분일 경우 관련 부채를 어떻게(① 매입채무, ② 다른 금융부채, ③ 별도 항목) 표시할 것인지

② ‘공급망 금융 약정’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무엇을 공시해야 하는지?

- 실무적으로 ‘**공급망 금융**’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역팩토링 약정(reverse factoring arrangement)**’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였음
 - (역팩토링 약정) 금융기관은 공급자에 대한 회사의 채무 금액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일 또는 지급 후 회사는 금융기관에 지급하기로 함

2. 해석위원회 회의 요약

- 해석위원회는 외부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결론내리고, 현 IFRS의 원칙과 규정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회계기준 제정 안건으로 추가하지 않도록 함

- ▣ (재무상태표: 표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역팩토링 관련 의무를 매입채무로서 금융부채를 표시

- ①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채를 나타냄
- ② 청구서를 받았거나 공급자와 공식적으로 합의
- ③ 정상영업주기 내에서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

- 매입채무와 유사한 성격과 기능을 가지는 기타 채무(other payables)만 매입채무와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 (예) 해당 부채가 정상영업주기 내에서 사용되는 영업자본의 일부

역팩토링 약정 관련 부채의 크기, 성격, 기능을 고려할 때 분리하여 표시하는 것이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한 경우 분리하여 표시*

* 이러한 판단 시 해당 약정으로 추가적인 담보(security)가 제공되는지, 그 약정 관련 부채가 다른 매입채무 조건과 다른 정도 등을 고려

- ▣ (금융부채의 제거) 역팩토링 약정 관련 부채의 제거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IFRS 9 '금융 상품' 기준서를 적용

-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를 제거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기업은 새 부채를 표시할 때 IAS 1을 적용

- ▣ (현금흐름표 분류) 역팩토링 약정 관련 부채 관련 현금흐름이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발생하는지 결정할 때, 약정 관련 '부채'의 특성 평가가 도움이 될 수 있음

- (매입채무*로 표시 O) 매입채무는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 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해당 부채를 결제 하기 위한 현금유출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로서 주요 수익창출 활동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

- (매입채무로 표시 X) 해당 부채는 대출부채(borrowings)를 나타내므로, 부채결제를 위한 현금유출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
- 역팩토링 결과 현금 유출입이 발생하면 현금흐름표에 표시하고, 그 금융거래에 현금흐름이 없는 경우 재무활동에 대한 모든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다른 부분에 공시

- ▣ (주석) 해석위는 역팩토링 약정이 자주 유동성 위험을 야기한다고 보았으며, IFRS 7은 유동성 위험을 포함한 금융상품 관련 위험의 공시를 요구

- 다양한 공급자가 아닌 단일의 금융기관에 부채가 집중. 단일 당사자에 한 시점에 유의적인 금액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 일부 공급자는 역팩토링에서의 매입채무 조기지급에 익숙하거나 의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 역팩토링 약정을 철회하는 경우 기업의 부채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업은 역팩토링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주석공시를 제공 할지에 대해 판단할 필요*

* 중요성 평가시 정량적·정성적 고려가 모두 필요

- 역팩토링 약정 관련 부채, 현금흐름을 어떻게 표시할지 평가할 때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AS 1에 따라 그러한 판단을 공시
- 역팩토링 약정이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 대해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공시

- 특정 부채에 대한 현금흐름이 재무활동으로 발생하였거나, 미래에 발생할 경우 그러한 부채 변동에 대한 공시가 필요

※ 회계기준원 관련 공지사항 참조: [IASB 및 IFRS 동향 '20년 12월](#)

02

GAAS

회계 관련 감독기관 동향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1. 과징금 제도의 개요

-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기재하여 공시한 경우 회사 등에게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비교

구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감법상 과징금 ('18년 시행)
회사	대상법인 서류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등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재무제표
	한도	· 증권신고서: Min(모집·매출가액의 3%, 20억원) · 정기보고서: Min(일일평균거래 금액의 10%, 20억원)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20%
회사 관계자	대상자	· 회사의 이사 등(증권신고서에 한함)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회계업무 담당자, 업무집행지시자 등
	한도	· 50백만원 (최대주주) · 20백만원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Min(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0.5~5배, 회사 과징금의 10%)
감사인	대상서류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증권신고서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감사보고서
	한도	· 감사보수의 2배	감사보수의 0.5~5배

2. 전체 과징금 부과현황

- 전체 부과현황
- 최근 3년간('19.1월~'21.8월) 회계감리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3억원의 과징금(자본시장법 과징금 275.1억원(87.8%), 외감법상 과징금 38.2억원(12.2%)) 부과

- 부과 총액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큰 규모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고의 위반사례 증가로 평균 부과액 증가
- 부과대상 별 과징금 부과현황**
 - '19.1월~'21.8월 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5억원으로 대부분(88.3%)이며, 임직원 23.0억원(7.3%), 감사인 13.8억원(4.4%)으로 구성되며, **부과총액 및 평균부과액 증가 추세**
 - ↳ 임직원의 경우, 전체 과징금(23.0억원)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21.2억원)이 92.2%를 차지하며, 최대부과액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로 크게 증가

3.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 부과현황**
 - 외감법상 과징금은 '20년부터 부과되어 '21.8월까지 총 38.2억원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 추가로 회사, 임직원 및 감사인 등에 부과

대상자	부과사례
회사	제조업 A사는 종속기업의 영업이익 과대계상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함으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외감법상 과징금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초과함에 따라 그 차액인 15.6억원을 추가로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임직원	코스닥상장 B사의 감사는 회사 결산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한 감사의 직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15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비상장회사 C사의 대표이사는 유형자산 허위계상 등에 대해 고의로 회계분식을 하여 회사과징금의 1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감사인	D 회계법인은 코스닥상장 E사에 대해 매출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보수의 15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4. 시사점

- (회사)**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모든 외감대상법인은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하여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과징금 부과(위반금액의 20%이내로서 한도 없음)
- (임직원)**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등에게 과징금 부과(금전적 보상의 5배 이내)
- (외부감사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회계기준위반과 함께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감사보수 5배 이내)

03

TAX



* 출처: Korean Tax Update_Samil Commentary, 2021.10

최신 세무뉴스

법무부,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 경과

법무부는 9.14.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대응 현황을 발표한 바, 2012년 제기된 첫 사건인 론스타 건,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엘리엇 및 메이슨 등 6 건의 진행 중인 사건과 기타 3건의 종료된 사건을 설명함.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2008년 HSBC 및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 및 투자보장협정 위반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것을 주장하여 손해배상(46.8억 USD)을 청구한 것이며, 법무부는 해당 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사건으로 판정시기나 결론에 대하여 설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

관세청, 납세자보호제도 시행 후 첫 기업심사 중지 결정

관세청은 9.10. 제7회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열어 납세자보호제도 시행(2020년 7월 신설) 후 첫 기업심사중지 결정을 내렸으며, 이번 의결은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업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함. 이번 사안에서 납세자는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심사를 받은업체로 관세청의 동일 기간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업심사에 대하여 중복조사로 인한 업무부담을 이유로 중지 요청한 바,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심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납세자의 과도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심사 중지를 의결하였음

2023년 도입 금융투자소득세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9.28. 발간한 예산정책연구(10권 3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기본공제 5,000만원, 거래세율 0.15% 적용) 세수가 약 1.7조원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함. 정부는 2023년을 기점으로 「소득세법」상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여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분류 과세하는 바, 이는 기존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었던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0.1% 인하함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디지털세 필라 1·2 최종 합의문 공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는 4년 간의 다자협의 끝에 10.8 총회에서 필라 1·2* 최종 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글로벌 조세개혁의 골격을 최종 완성하였음. 이번 합의로 국가 간 이견이 큰 정치적 쟁점 사항이 모두 결정되었으며, 필라 1·2는 22년 중 필요한 제도화 과정(다자협정 비준 및 국내 법제화 등)을 거쳐 23년부터 시행 계획임

구체적으로 필라1 관련하여 초과이익 배분비율(배분총량) 25% 확정, 분쟁대응역량이 낮은 개도국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의 선택적 적용 허용 및 기존의 디지털서비스세(DST) 등 국가별 단독과세 폐지·도입 금지 하는 등의 결정을 하였음. 또한 필라2 관련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15%로 확정하였고, 실질활동지표인 급여 및 유형자산 장부가치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해외진출 초기기업에 대한 비용공제부인규칙의 5년 간 적용 제외, 원천지국과세규칙 최저한세율을 9%로 확정 및 비용공제부인규칙 시행시점을 2024년으로 유예하는 등의 결정을 하였음

*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신 세무예규판례

합병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시 사업영위기간에 사업목적 신축공사기간 포함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1항은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요건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1항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 §29 ③)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간 합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함에 따라 공사기간 중 임대업에 따른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동 공사기간이 상기 규정에 따른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본 사안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공사기간 중 임직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한 점, 계속하여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의 신고를 한 점, 임대용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은 당초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일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질의의 공사기간이 감면규정의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 (지방세특례제도과-1604, 2021. 7. 7.)

이번 유권해석은 공사기간을 사업영위기간으로 인정하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음에도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인용하여 공사기간으로 인한 불가피한 공백을 사업영위기간으로 인정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조심2013지0011, 2013. 5. 2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2, 2018. 12. 12.)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1항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합병시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승계받은 동일한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승계받은 건물을 멸실 후 신축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는 바, 이번 유권해석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서울세제-2127, 2020. 2. 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벤처기업의 판정시점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분할 납부 특례 및 양도소득세 과세선택 특례 규정(조특법 §16의 2 ~ §16의 4)을 두고 있음

이번 사안의 쟁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시점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과세특례 규정(조특법 §16의 2 ~ §16의 4)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조특법 §16의 2 ~ §16의 4)에서 정하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함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 2021. 8. 31.)

이번 유권해석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의 판정시점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점이 아닌 부여시점임을 명확히 한 해석사례로 판단되며, 이번 사안과 반대의 사실관계, 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이 부여시점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었으나, 행사시점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분할납부 특례(조특법 §16의 3)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인 바, 이번 해석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6, 2021. 3. 8.)

04

KSOX 내부회계관리제도



KSOX

2020 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1. 배경

- 금융감독원은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의 '20 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의견을 점검하였으며, '20 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대상은 413사로서 '19 회계연도 160사 대비 253사 증가*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확대에 따른 증가: 자산 2조이상('19년) ...> 자산 5천억원이상('20년)

2. 감사의견 분석내용

□ 감사의견 현황

- '20 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의견(중요한 취약점 발견 또는 범위제한) 회사수는 5개사(1.2%)로 전기 4개사(2.5%) 대비 1.3%p 감소되어 비적정의견 비율이 감소
- 단계적 확대에 따른 감사대상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적정의견 비율이 감소한 것은 5천억원 이상 중·대형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 대비목적으로 회계법인에 자문하에 내부회계 시스템 정비를 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비한 것으로 평가. 향후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시 비적정의견 비율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3. 회사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 현황

- '20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회사는 1개사로(전기 1개사 동일),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상장법인 5사 중 4사의 감사(위원회)는 적정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평가

4. 중요한 취약점, 유의적 미비점 유형

□ 중요한 취약점

- 중요한 취약점(12건)은 대부분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점(11건)으로 구성

- **비정적의견 사유: 중요한 취약점 및 범위제한**

구분			FY 2019	FY 2020
중요한 취약점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특정분야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창출단위의 자산 손상 · 유형자산 및 사용권자산 손상 · 리스 회계처리 · 종업원(단체)과 체결한 약정 인식 · 금융상품 회계처리 정확성 검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창출단위의 자산 손상 · 유형자산 손상 ·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 원가 인식 · 유형자산 인식 등
		회계정보 전반통제	-	재무제표 작성 과정 및 정확성 검토
	내부통제 환경구축 미흡		-	내부회계 운영 수준 및 통제환경 수준 미흡
범위제한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 유의적 미비점

- '20 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설문조사* 결과 유의적 미비점은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미비점 비율이 61.8%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외에도 다양한 유형을 지적하는 추세

* 내부회계 감사 수행 상위 9개(감사 건수 기준) 회계법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유의적 미비점 유형**

구분	건수	비 중
①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 관련 통제 미비	42	61.8%
② 정보기술통제(ITGCs) 미비	8	11.8%
③ 회계정책 기준서 등 문서화 미비	4	5.9%
④ 접근제한 및 업무제한 통제 미비	3	4.4%
⑤ 내부감사기능 미비	3	4.4%
⑥ IPE* 관련통제 미비	2	2.9%
⑦ 기타	6	8.8%
합계	68	100.0%

* IPE(Information Produced By Entities): 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주요 정보

5. 재무제표 감사와의 관계

- '20회계연도 내부회계 감사 비적정의견 5사 중 2사는 내부회계감사시 지적된 중요한 취약점 등이 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이어져 비적정의견을 받음

6. 시사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결 내부회계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고 감리는 내부회계 감사 시행일부터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3년간, 연결 재무제표는 2년간 계도 위주로 운영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통보한 내부회계 취약점에 대해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독립적으로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감사인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한 뒤 평가의견을 형성할 필요 있음
- 정보이용자는 외부감사인이 공시한 중요한 취약점의 내용뿐만 아니라 회사가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서'(사업보고서 첨부)에 공시한 중요한 취약점의 원인, 개선계획, 이행결과 등도 유의

ESG와 내부통제

- 2021년의 경영 화두는 ESG라고 할 만큼 시장의 관심이 높으며, 기업 및 투자자 활동에서 ESG는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 이에 따라 ESG 정보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으며, 관련 공시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 2021년 1월 금융위원회는 기업 공시부담 경감, 투자자 보호 강화,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ESG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됨
- 먼저 G(지배구조)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데,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화함. 이번 개선방안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화할 계획을 담고 있음
- 한편, E(환경)와 S(사회)는 공식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수의 기업만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거래소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 단계별 확대방안**

적용시기	현행	'22년	'24년	'26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전 코스피 상장사

-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및 단계별 의무화 방안**

1단계(~'25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
2단계('25년~'30년)	일정규모 이상(예: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
3단계('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

- 이러한 ESG와 관련된 공시제도의 강화가 요구되는 환경하에서는 회사의 ESG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중 “정량지표의 개발과 보고” 측면의 일관되고 통제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일관되고 통제된 정책에 따라 지표의 작성과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ESG 보고 관점에서도 재무보고관점에서의 내부통제,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유사한 프로세스의 정립이 필요함을 의미함

[ESG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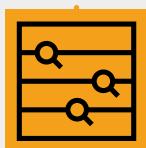
01. 이해관계자 현황 파악

직원을 포함하여 각 이해관계자 그룹을 식별하고 각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 측면을 결정한다.



02. 목적이 주도

이제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므로 목적을 정의하고 관련 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추진한다. 이해관계자마다 바라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일련의 ESG 측정치가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사용한다.



03. 정량 지표의 개발과 보고

지표를 정량화하고 보고하기 위한 일관되고 통제된 정책을 개발한다.

- 사업 운영에서 경영진이 사용하는 지표와 외부에 보고하는 지표를 일치시킨다.
- 기준 또는 보고 체계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방식으로 지표를 구성한다.
- 일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비교 수치를 제공한다.
- 적절한 형식과 보고 빈도를 결정한다.
- 재무보고에 대한 통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표의 작성 및 보고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구축한다.
- 기업의 산업 및 시장을 고려하여 가장 관련성 높은 지표를 제공한다.



04. 활동

회사의 목표 설정에 직원들이 참여하게 하고, 보상을 목표 달성을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05. 재평가

사회/경제/정치 환경의 변화는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바꿀 수 있다.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ESG지표에 계속 공감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 이러한 통제되고 일관성 있는 절차를 마련을 통해 회사의 경영진은 'ESG 보고서상의 정보는 어떻게 집계하는지', '데이터의 취합과 관련된 정책은 어떠한지', 'ESG 정보가 신뢰할 수 있고 완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회사의 통제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정보나 보고내용에 대해 내부감사부서나 감사위원회 등이 수행하는 관여나 감독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음

KSOX

코스닥협회 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FAQ streaming

- 코스닥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와 고도화 관련된 실무 FAQ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를 위한 FAQ를 준비하여 2021년 10월초부터 코스닥협회 Site를 통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
([코스닥협회 Site: 「내부회계관리제도 주요 실무 FAQ 설명회」 개최 및 참가 안내](#))
- 이번 FAQ는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2.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실무 FAQ, 3.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 FAQ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회계 감사와 고도화, 그리고 연결내부회계 준비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많은 궁금증이 있는 항목에 대해 FAQ형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
- 코스닥협회사는 10월초부터 해당 스트리밍을 시청할 수 있으며, 삼일회계법인은 2021년 11월 경 PwC Korea YouTube를 통해 해당 영상을 공유할 예정



Contacts

GAAP

이 수 미, Partner

+82 2 3781 9548

sumi.lee@pwc.com

TAX

최 혜 원, Partner

+82 2 709 0990

hyewon.choi@pwc.com

GAAS

성 현 주, Partner

+82 2 3781 9252

hyun-joo.sung@pwc.com

K-SOX

정 구 진, Part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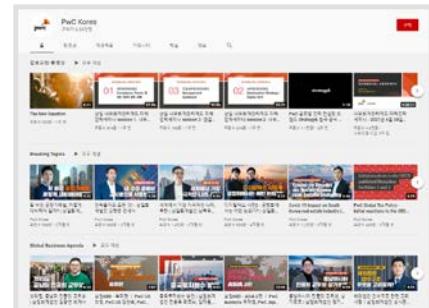
+82 2 3781 9757

goojin.jeong@pwc.com



삼일회계법인 공식 YouTube 채널
[바로가기 Click](#)

삼일 전문가들의 Insight와 최신 업계 동향,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삼일의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
하고 있습니다.



www.samil.com

S/N: 2110A-NL-006

© 2021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